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8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서 상속 및 증여 제외(차규근의원안)	2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8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1. 6.
- (3) 회 부 일 : 2024. 1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서 상속 및 증여 제외 (차규근의원안)

현행	개정안
☐ 주식의 현물출자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38조의2) ○ 요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 -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 -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계속 ○ 내용: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이연 가능	☐ 주식의 현물출자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 상속 및 증여 제외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과세특례 내용: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할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이연 가능

* 차규근의원안 2024. 11. 6. 발의(의안번호 5285)

☐ 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요건 중 ‘처분’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하

게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 주주의株式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지주회사란 株式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후 복잡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구조에서 지주회사 중심의 단순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¹⁾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음.

[지주회사(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포함) 현황]

(단위: 개)

구 분	'16	'17	'18	'19	'20	'21	'22	'23
일반지주회사	1,715	2,020	1,914	1,836	2,026	2,011	2,266	2,328
금융지주회사	124	144	128	147	163	167	194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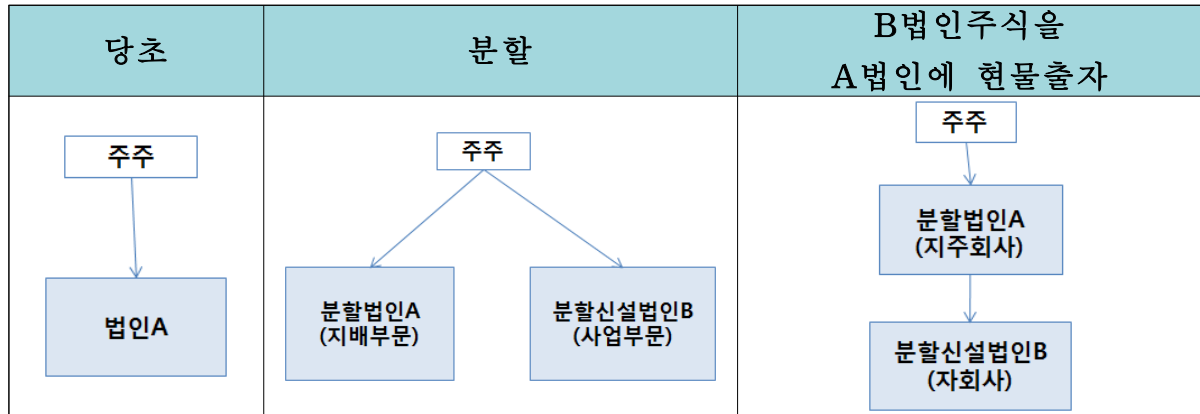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은 주로 3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을 지배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한 후, 사업부문

1)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체제에서는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자회사의 최소지분율 요건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법인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고, 사업단위로의 회사분할에 따라 기업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됨.

이 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주회사가 되는 지배부분의 분할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이루어짐.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이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막대한 세 부담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2001년에 도입되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됨

□ 한편, 2010년 세법개정 이전의 법률(법률 제9921호)²⁾에서 주식 처

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21호)」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의 사례로 ‘상속 및 증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처분에는 ‘상속 및 증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³⁾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 그런데, 최근 하급심⁴⁾에서 상속 및 증여가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처분’에 상속 및 증여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전환 장려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과세이연 특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현재 처분에 상속 및 증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 중⁵⁾에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이연된 금액의 과세 방법 내에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8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았다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17)

5) 기획재정부는 2016.11.15. 예규(금융세제과-242)에서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정하는 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된다”라고 해석